

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5월 9일

여수시장

2023/12/3



여수시 조례 제1879호

붙임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1879호

##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중 “따라 6.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”를 “다른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리 증진 및”로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 유공자(이하 “유공자”라 한다) 및 배우자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참전유공자”란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의해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
2. “배우자”란 제1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(법률상 배우자에 한정함.이하 같다)를 말한다

제3조 본문 중 “배우자(이하 “미망인”이라 한다)”를 “배우자”라 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중 “미망인에게 미망인”을 “배우자에게 배우자”로 한다

제4조제2항 중 “만85세”를 “85세”로 한다

제5조제1항 중 “참전명수당과 미망인”을 “참전명예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, 배우자”로, “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별지 제2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2호서식”으로 하며, 같은 조

제4항 중 “신청하여 지급받는”을 “지급받는”으로, “별지 제3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3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제3조 단서”를 “제3조”로 한다.

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“판명된”을 “밝혀진”으로 한다.

조례 제1555호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목과 본문 중 “미망인”을 “배우자”로 한다.

서식1. [별지 제1호의1서식]은 삭제한다

서식2. [별지 제1호의2서식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급신청서]를 서식1. [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]로 변경 한다

서식3. [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]를 서식2. [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] 변경한다

서식4. [별지 제3호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]를 서식3. [별지 제3호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]로 변경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여수시 조례 제 호

## 여수시 참전유공자 V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여수시 참전유공자 V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리증진 및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 유공자(이하 “유공자” 라 한다) 및 배우자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참전유공자”란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에 의해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
2. “배우자”란 제1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(법률상 배우자에 한정함.이하 같다)를 말한다

제3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유공자 및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(이하 “배우자”라 한다)로 한다. 다만,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및 그 유족인 배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4조(지원사업) ①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유공자 등에

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
2. 배우자에게 배우자 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
3.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
4.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

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85세 이상인 유공자에게는 월 15만원을 지급한다. 다만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은 월 10만원을 지급한다.

제5조(지급방법 및 시기) ① 참전명예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, 배우자명예수당(이하 “명예수당“이라 한다)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, 시장은 매월 25일(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)에 명예수당을 지급한다.

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중 지정한 예금 계좌의

변경 등 변경신고사항이 발생한 사람은 **별지 제3호서식**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급대상자의 결정) ① 시장은 매년 1월 중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 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**제3조에 따른**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해야 한다.

제6조의2(지급중지 및 환수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

1.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자치단체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
2. 지급대상자가 지원 부적격자로 **밝혀진** 경우

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명예수당은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라 6.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<u>참전의 명예를 기리고</u>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참전 유공자의 범위) <u>참전 유공자(이하 "유공자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6·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6·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(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)한 <u>군인</u></li> <li>2. 「<u>병역법</u>」 또는 「<u>군인사법</u>」에 의한 <u>현역복무 중 1964년</u></li> </ol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다른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리 증진 및</u> 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<u>참전 유공자(이하 "유공자"라 한다) 및 배우자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"참전유공자"란 「<u>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 의해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</li> <li>2. "배우자"란 제1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(법률상 배우자에 한정함. 이하 같다)를 말한다.</li> </ol>

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

3. 6·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

4. 6·25전쟁에 참전(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)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

5.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·통제를 받아 6·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

제3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은 지급 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유공자 및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(이하 “미망인”이라 한다)로 한다. 다만,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및 그 유족인 배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4조(지원사업) ①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유공자

제3조(지원대상) -----  
-----  
-----  
-- “배우자”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4조(지원사업) ① -----  
-----

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 
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1. (생략)
- 2. 미망인에게 미망인 명예수당  
월 10만원 지급
- 3. 4. (생략)

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만85세  
이상인 유공자에게는 월 15만원을  
지급한다. 다만, 「국가유공자  
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 
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  
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법 제12  
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  
은 월 10만원을 지급한다.

제5조(지급방법 및 시기) ① 참전  
명예수당과 미망인 명예수당(이  
하 “명예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  
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  
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  
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 
하며, 시장은 매월 25일(토요일  
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  
는 그 전날)에 명예수당을 지급  
한다.

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  
는 유족은 별지 제2호 서식에  
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

-----  
-----.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배우자에게 배우자 -----  
-----
- 3. 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85세  
이상인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5조(지급방법 및 시기) ① 참전  
명예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 
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,  
배우자 -----  
----- 별  
지 제1호서식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 별지 제2호서식-----  
-----

여야 한다.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④ 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사람 중 지정된 예금 계좌의 변경 등 변경신고사항이 발생한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급대상자의 결정)

① (생략)

②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3조 단서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해야 한다.

제6조의2(지급중지 및 환수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지급대상자가 지원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

② (생략)

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지급받는-----

-----별지 제3호서식-----

-----.

제6조(지급대상자의 결정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제3조-----

-----

-----.

제6조의2(지급중지 및 환수) ① -

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 
-- 밝혀진 --

② (현행과 같음)